

제 안 요 청 서

(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)

국 토 교 통 부
(건 설 안 전 과)

< 목 차 >

I. 연구용역개요	1
II.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	2
III. 주요 과업내용	2
IV. 과업수행지침	5
V.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	10
VI. 예정공정표	11
VII. 보안대책	12
VIII. 제안서 작성 및 제출	15
IX. 업체선정방법	17
X. 평가방법 및 기준	19

I. 연구용역개요

1. 추진배경 및 목적

□ 도심지 및 공용중 시설물 등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('16.1.7.)

○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'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'을 수립·시행토록 의무화됨

*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(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□ 기본계획은 지반침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최상위계획으로,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

○ 현재 이행 중인 제1차 기본계획('20~'24) 이후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체계적·연속적 추진을 위해 정책방향 수립 필요

○ 제1차 기본계획의 이행결과 분석, 대내·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 마련

2. 예 산 : 100백만원(부가세 포함)

* 1차분: 20백만원, 2차분: 80백만원

3. 용역기간 : 계약일로부터 전체 10개월 (1차분 2개월, 2차분 8개월)

4. 수행기관 선정방식 :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

Ⅱ.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

1. 참가자격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동법시행령 제12조(경쟁 입찰의 참가자격)에 의한 유자격자
 - ※ 전문성 있는 업체(기관)가 공동수급체(공동이행)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,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“공동계약 운용요령”에 의함

2. 계약방법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에 의한 “협상에 의한 계약”

Ⅲ. 주요 과업내용

1. 제1차 기본계획('20~'24) 시행 결과 평가 및 시사점 도출

- 제1차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과제 시행결과 분석 및 평가
- 제1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 시사점 도출

2.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초 현황 분석

- 국내 지하개발사업 추진 현황 분석
- 국내 지하시설물 관련 관리 현황 분석
- 지하시설물의 노후도와 지반침하 발생의 연계성 분석

-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와 지반침하 발생의 연계성 분석
- 국내·외 지반침하 발생 현황·추이 및 원인 분석

3.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여건 분석 및 전망

- 지하안전관리 관련 국내·외 사회·경제·환경 여건 분석
- 지하안전관리 관련 국내·외 정책 및 법제도 현황 분석
- 지하안전관리 관련 법정계획* 현황 분석
- 지하안전관리 관련 국내·외 연구·산업 동향 검토
- 메가트렌드* 분석 및 지하안전관리 분야 영향 전망
- 지하안전관리 업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(중앙, 지자체, 민간 등)

4.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

-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 마련
- 계획 수립 목표 및 계획 지표 설정
- 계획 여건에 따른 계획의 추진방향 도출
- 부분별 정책 목표 및 지표 설정

5. 「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」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

- 중장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-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·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-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-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
- 기본계획과 하위계획 및 개별계획의 연계성 제고 방안
- 지하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·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-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작성·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

5. 향후 실행 계획 등

- 단계별, 연차별 추진 전략 제시
- 재정 확충 및 재원 조달 방안 검토
-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등
- 취약지역 지반침하 안전점검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
- 지하안전관리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
- 지하안전관리정책 관련 대국민 소통채널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
- 공청회 개최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심의 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업무 이행 등
-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

IV. 과업수행 지침

1. 일반지침

- 1)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과업별 인력투입계획,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**착수계**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.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수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.
- 2)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,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 계획에 의거 감독관이 요청 시 추진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,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4)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5)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6)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- 7)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.
- 8)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국내외의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9)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, 필요 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.

2. 과업보고

- 1) 착수보고 : 계약 후 14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, 연구수행방법, 추진일정 계획(예정공정표 포함),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.
- 2) 중간보고 : 과업의 중간보고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고한다.
- 3) 최종보고 :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준공 20일 전에 보고한다.
- 4) 수시보고 :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.

3. 세부과업지침

1) 용어의 해석

-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, 발주청과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협의하여 처리한다.

2)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변경

-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.
- 과업수행자가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상의 과업 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.
-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청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,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3) 용역비용의 사용

-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.

4)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

-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발주청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협의하여 처리한다.

5) 자문회의

-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구성하고,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·보완 할 수 있다.
- 자문회의 개최시기(일정) 및 자문사항은 연구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6) 성과품 소유

-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.

*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를 준용한다.

-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,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. 다만,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(국가안전보장, 국방, 외교관계 등)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.

8)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

- 본 과업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.

-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, 발주청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9)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

-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,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.
 -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 -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
 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

10) 기타사항

-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청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, 기타 행정기관 등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다.
-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.

V.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

1. 일반사항

- 1)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.
- 2)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20일 전에 최종보고서(안)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.
- 3)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,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.

2.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

1) 보고서 작성

-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.
-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2) 과업성과품의 제출

구 분	제출 시기	제출수량	비 고
착수보고서	계약 후 14일 이내	10부	과업수행계획 포함
중간보고서	발주처 협의	10부	
최종보고서(안)	준공일 20일전	10부	
기본계획(안)	준공일 20일전	10부	
최종보고서	준공검사원 제출 시	100부	최종보고서(CD포함)
기본계획	준공검사원 제출 시	300부	

※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VI. 예정공정표

과업내용	과업기간(월)									
	1	2	3	4	5	6	7	8	9	10
□ 제1차 기본계획 시행결과 평가 및 시사점 도출										
○ 제1차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과제 시행결과 분석 및 평가	■									
○ 제1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 시사점 도출	■									
□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초 현황 분석										
○ 국내 지하개발사업 추진 현황 분석	■									
○ 국내 지하시설물 관련 관리 현황 분석	■									
○ 지하시설물의 노후도와 지반침하 발생의 연계성 분석	■									
○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와 지반침하 발생의 연계성 분석	■									
○ 국내·외 지반침하 발생 현황·추이 및 원인 분석	■									
□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여건 분석 및 전망										
○ 지하안전관리 관련 국내·외 사회·경제·환경 여건 분석	■									
○ 지하안전관리 관련 국내·외 정책 및 법제도 현황 분석	■									
○ 지하안전관리 관련 법정계획 현황 분석	■									
○ 지하안전관리 관련 국내·외 연구·산업 동향 검토	■									
○ 메가트렌드 분석 및 지하안전관리 분야 영향 전망	■									
○ 지하안전관리 업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	■									
□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										
○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 마련		■								
○ 계획 수립 목표 및 계획 지표 설정		■	■							
○ 계획 여건에 따른 계획의 추진방향 도출			■	■						
○ 부분별 정책 목표 및 지표 설정			■	■						
□ 「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」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										
○ 중장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		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
○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·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		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
○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		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
○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		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
○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		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
○ 기본계획과 하위계획 및 개별계획의 연계성 제고 방안		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
○ 지하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·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		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
○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작성·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		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
□ 향후 실행 계획 등										
○ 단계별, 연차별 추진 전략 제시							■	■	■	■
○ 재정 확충 및 자원 조달 방안 검토							■	■	■	■
○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등							■	■	■	■
○ 취약지역 지반침하 안전점검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							■	■	■	■
○ 지하안전관리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							■	■	■	■
○ 지하안전관리정책 관련 대국민 소통채널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							■	■	■	■
○ 공청회 개최,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심의 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업무 이행							■	■	■	■
○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				■	■	■	■
보고 시기	↑				↑				↑	
	최초보고				중간보고				최종보고	

VII. 보안대책

- 1)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“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(국토교통부훈령 제626호, '15.12.15)”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,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정·부 보안책임자를 지정·관리하여야 한다.
- 3)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 부에 전량 납품한다.
- 4)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·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,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5)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.
- 6)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7)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,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.

- 8)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,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,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·관리하여야 한다.
- 9)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,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 수행상 발생한 원지,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·소각하여야 한다.
- 10)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하여야 한다.
- 11)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·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·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,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- 12)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,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(삭제)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.
- 13)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“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VIII. 제안서 작성 및 제출

1. 작성요령

-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
- 제안서는 A4용지 30매 이내로 아래한글로 작성
- 실적,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제출

2.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
-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
-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·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
-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,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(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 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)

3. 제안서 제출

가. 제출기간 : 입찰공고문에 따름

※ 제안서 발표일정 (별도 통보)

나. 접수방법 : 온라인 제출(e-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 제출)

다.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 및 문의

○ 열람·문의 :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(044-201-3586/3582)

라. 제출서류: 입찰공고문에 따름

IX. 업체선정방법

1. 선정방식 및 절차

가. 선정방식 :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

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

-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

○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%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

-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

※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,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

나. 선정절차

(1)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

- 평가비율 : 기술평가(80%), 가격평가(20%)
- 종합평가점수 = 기술 평가점수 + 입찰가격 평가점수

(2) 기술평가

-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

(3) 가격평가

-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
-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

(4)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

-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
-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

X. 평가방법 및 기준

1. 제안서(기술)평가

가.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요소		배점	평가요소	평가방법	비고
1	기관평가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산, 자본, 부채비율 등(정부출연연구기관, 대학부설연구소,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5점 부여) 	계량평가	주1)
2	투입인력평가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여 연구인력(석, 박사 등)의 경력 	"	주2)
3	신용도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(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) 	"	주3)
4	과업추진 체계 및 일정	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○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	비계량평가	주4)
5	과업접근방법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수행범위 설정의 적정성 ○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논리성 ○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성과물 활용 ○ 연구성과 도출 방향 	"	"
6	과업수행계획	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수행체계의 합리성 ○ 과업추진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○ 성과도출 결과의 적정성 	"	"
계					

주1) 계량평가(5)

- 재무구조·경영상태(5)

구 분	배 점					
		100%이상	90%이상	80%이상	70%이상	70%미만
·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(자기자본/총자산)/기준비율	(2.5)	2.5	2.0	1.5	1.0	0.5
		100%이상	90%이상	80%이상	70%이상	70%미만
· 최근년도유동비율 (유동자산/유동부채)/기준비율	(2.5)	2.5	2.0	1.5	1.0	0.5
		100%이상	90%이상	80%이상	70%이상	70%미만

※ 기관예산규모는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기준이며, 기준비율은 입찰참여 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함(참여기관 중 1개 기관이라도 '23년 기준이 없을 경우 '22년 예산기준으로 평가)

주2) 계량평가(10)

- 참여 연구인력 보유현황(10)

구 분	4인 이상	3인	2인 이하
배 점	10	7	3

※ 토목 및 지반·지질 등 관련분야 전공 석사·박사급 참여 연구인력 수

주3) 계량평가(5)

- 징계회수 : 0회(5), 1회(3), 2회 이상(0)

주4) 비계량평가(80)

- 용역수행정도에 따라 아래 점수비율로 배분하여 합산평가

구 분	배점	평가정도				
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다소 미흡	미흡
과업추진체계 및 일정	25	25	20	15	10	5
과업접근방법	30	30	25	20	15	10
과업수행계획	25	25	20	15	10	5

나. 평가점수 산정

- 점수 : 기술능력평가득점 × 8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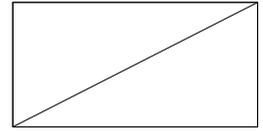
2. 입찰가격평가

-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」 상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

제안관련 서식일람

- 1-1. 과업제안서(표지, 원본)
- 1-2. 과업제안서(표지, 사본)
2. 제안업체(기관) 일반현황
3.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
4. 연구진(책임연구원) 이력사항
5. 용역(연구) 수행실적

<양식 1-1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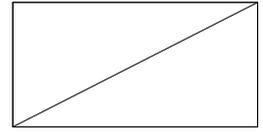


과업제안서

용역명 : 제2차 국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

업체명 : (인)

<양식 1-2>



과업제안서

용역명 :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

기술제안평가용

<양식 2>

제안업체(기관) 일반현황

1. 회사(기관)명		2. 대 표 자			
3. 용역등록 분야					
4. 주 소					
5. 대표 전화번호					
6. 설 립 연 도	년 월 일				
7. 주 요 연 혁					
8. 예 산 규 모 (최근 3년간 자산, 자본, 부채 등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)	(단위 : 백만원)				
	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비고
	총자산				
	자기자본				
	유동자산				
	유동부채				
	부채비율 매출액				
9. 상시 종업원수					
10.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					

<양식 4>

연구진(책임연구원) 이력사항

성 명		소 속		직 책		연 령	세
학 력	전공			해당분야 경력		년 월	
본 용역 참여임무				학위 또는 자격사항			
주 요 경 력							
용역명(논문명)	참여기간 (년월 ~ 년월)		담당업무		발주처	비 고	

- 주) 1.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.
 2.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

<양식 5>

용역 (연구) 수행실적

건 명	개 요	수주금액	발주처	계약일	착수일	준공일	비고

- 주) 1.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관련연구 논문 및 프로젝트 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 (학위연구논문 제외)
2.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
3.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
4.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